

■ 최신 법령 ■

[금융관련법] 「상호저축은행법」 일부개정

이승현 변호사 | 안상훈 변호사

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 유도,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보호 및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억제 등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하여 왔으며, 이러한 취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. 위 개정안은 2013년 8월 13일자로 공포되었으며,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예고된 개정안(이하 '안'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주요 내용

1) 상호저축은행 여신의 건전성 제고(안 제13조 신설)

-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여신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여신심사위원회와 여신의 적정성 등을 감리하는 부서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.
- ②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심사업무에 대한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부당·부실 여신의 취급을 억제하여 상호저축은행 자산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2)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보호 강화(안 제14조,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 신설)

- ① 예금 등이나 후순위채권과 같은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 시 거래자에게 예금자보호 여부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, 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시 유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

- ② 거래자에게 상호저축은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거래자의 투자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, 거래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3)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·모집 제한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 도입(안 제18조의2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)

- ①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·모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,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매출·모집을 허용하는 한편, 계열사를 통한 부실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을 도입하였습니다.
- ②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·모집 제한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,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의 도입을 통해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간의 동반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4) 대주주 검사제도 도입 및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(안 제22조의6 신설, 안 제38조의2)

- ① 금융감독원장은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, 대주주 등이 불법으로 신용공여, 예금 등 및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.
- ② 불법행위를 한 대주주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, 대주주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정도(正道)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5)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지도제도 개선(안 제24조의2)

- ①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의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

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- ② 경영지도 대상 확대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,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2. 다운로드 : 「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」